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 9. 6.)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97675)

|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          |                |          |          |                |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br>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br>높은<br>위험        | 높은<br>위험 | 다소<br>높은<br>위험 | 보통<br>위험 | 낮은<br>위험 | 매우<br>낮은<br>위험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고수익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채무증권 위험, 환위험, 파생상품 위험, 신흥시장 국가위험, 분배금 지급관련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정보는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투자자 유의사항

| 리오매니저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의사 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 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 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br>대한 손실위험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채무증권 위험          | 투자신탁의 채무증권 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 및 통화 환율 변동에 따라, 그리고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변동합니다. 투자신탁은 고수익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가치하락 및 자본손실 실현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을 지니거나,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으나 그에 상당하는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은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채무증권보다 수익률과 시가 측면에서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
| 환위험              |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 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해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br>*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해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해지비율은 80%~100% 수준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해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해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위험            | 투자신탁의 증권 또는 포지션을 평가, 매도하거나 희망하는 시기 또는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신탁이 환매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유형, 매도 제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보다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중개 및 기타 거래 수수료 등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   |

|              |  |
|--------------|--|
|              | 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상황, 특히 매수 의향이 있는 매수인 부족으로 인하여 펀드가 그 포지션 또는 보유물량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펀드가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해야 하거나 투자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파생상품 위험      |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
| 국가위험— 일반     |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와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발행회사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율, 자본재투자, 자기자원 충분성 및 수지균형 면에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내부자거래 규정, 시장조작 금지, 의결권대리행사 요건 및 적시 정보 공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이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국유화, 강제 수용, 압류 조세, 통화 봉쇄, 정치적 격변, 정부 규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외교상황 변화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나 동 국가에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 국유화나 기타 압류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자산의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성, 파산, 도산 등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신흥시장   | 투자신탁은 선진시장에 소재한 발행회사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변동성 및 현저하게 낮은 유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발행회사 유가증권에의 투자는 선진시장 발행회사 유가증권에의 투자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 투자신탁의 경우 분배금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는 바,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배금 지급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분배금 지급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자원본에서 마련되기 때문입니다.<br>또한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종료일은 매년 6월 30일이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배금을 지급받는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b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r>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b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r>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기준가    | 산정방법<br><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기기구 총좌수</li><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ul>                               |  |   |
|        | 공시장소<br>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www.abfunds.co.kr">http://www.abfunds.co.kr</a> ) ·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b>  |   |
| 과세     | 수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b>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li> <li>-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므로, 분배금 중 과세대상인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종료일은 매년 6월 30일이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분배금을 지급받는 매월 과세</li> </ul> |   |

|            |  | 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월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분배금을 지급하여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r>*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하는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1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분배금: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무증권들의 추정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li><li>분배기준일: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일),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합니다.</li><li>분배금 지급일: 분배기준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li></ol> <p>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분배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 <b>분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p>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주) (☎ 02-3707-3400/ 홈페이지: <a href="http://www.abfunds.co.kr">www.abfunds.co.kr</a> )<br>(외화자산 관련 위탁운용사: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   |           |  |            |        |           |  |       |         |  |      |  |           |   |    |      |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 · 매출 총액  |           |  |            |        |           |  |       |         |  |      |  |           |   |    |      |   |       |   |
| 효력발생일      | 2024년 9월 6일  | 존속 기간   |           |  |            |        |           |  |       |         |  |      |  |           |   |    |      |   |       |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abfunds.co.kr">www.abfunds.co.kr</a> )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         |  |      |  |           |   |    |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 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head><tbody><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td></tr><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td></tr><tr><td>온라인 슈퍼(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tr><td rowspan="2">기타</td><td>랩(w)</td><td>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기관(I)</td><td>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body></table>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타 | 랩(w) |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관(I)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기타         | 랩(w)   |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기관(I)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http://www.abfund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http://www.abfund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http://www.abfunds.co.kr))